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
------	-----

2018. 12. 1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7일, 이준형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8.12.17.) 상정, 검토보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준형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인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3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산업진흥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시민의 정보 제공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임원의 임기 규정(안 제7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제4조 제3항),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제8조 제1항).
- ‘지방 출자·출연법’이 임원의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임원의 임기를 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됨.
- 이처럼 ‘지방 출자·출연법’에서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의적으로 조례나 정관에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음.

<임원의 임기 규정 현황>

규정 형식	조례	정관
기관수	10개	8개
기관명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관광재단, 50플러스 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장학재단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 조례상 임원의 임기 규정 현황은 <붙임자료 2> 참조

-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서 임원의 종류(대표이사, 이사, 감사)와 정수 등을 정하고 임원의 임기 등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며(제7조), ‘정관’ 제10조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서울산업진흥원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상향 명시하는 것으로 현재 임원 운용 체계에 부합해 내용상 문제는 없음.
- 또한, 임원의 임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이므로 이를 내부 규정인 ‘정관’보다 자치법규인 조례에 명시해 의회의 입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이준형, 문병훈, 이호대,
이세열, 박기재, 김제리,
오중석, 한기영, 이현찬,
오현정, 오한아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 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생략)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u>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p>제7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④ (현행과 같음)</p>